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. 29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1호, 제8조, 제29조제1항제9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윤○민	981225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 (출석 의무 연속 2회 불이행)	-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-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기도 파주시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4. 1. 29. ~ 2024. 2. 13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파주고용센터 이경민(Tel. 031-860-04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